安東權氏大宗會 定款

第1章總則

第1條(名稱) ①本會는 安東權氏大宗會(以下 本會)라

②本會는 安東權氏 門中의 最高機構이다.

第2條(目的) 本會는 安東權氏의 1千餘年 歷史와 傳統 을 이어온 國內外 安東權氏 의 唯一한 代表機關으로 서 崇祖理念의 確立, 愛族思想鼓吹, 門事振作, 後學啓 導. 文化暢達. 社會倫理培養. 社會奉仕活動을 目的으 로 한다.

第3條(事務所) 本會는 서울特別市와 安東市에 事務所 를 둔다.

第4條(會員의資格)本會의正會員은國內外에居住하 는 安東權氏 男女 및 安東 權門으로 入籍된 婦로 한다. 第5條(會員의 權利)會員은 本會에 대한 發議權 및 受惠 權을 갖는다.

第6條(會員의義務) ①모든 會員은 安東權門의 一員으 로서 品位를 維持하고 定款을 遵守 한다.

②任員은 所定의 年會費를 納付하여야 하며 2回 以 上 未納時는 任員의 資格이 喪失된다.

③ 會費 基準額은 常任委員會에서 定한다.

第2章機構

第7條(組織) 本會의 機構 및 組織은 다음과 같다

①本會에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總會를 두며 總會의 運營을 圓滑하게 하기 爲하여 宗務委員會를 둔다. 宗 務委員會의 運營을 돕기 위하여 그 權限을 一部 委任 받은 常任委員會를 둔다.

②本會의 傘下에 派宗會長協議會를 두고 그 傘下에 15個派宗會를 두며 派宗會 傘下에 支派宗會를 둔다. 支派宗會의 構成內容을 本會에 登錄한다.

③本會의 傘下에 各地域宗親會長이 参與 引는 地域 宗親會長協議會를 두고 그傘下 에 地域宗親會를 둔다. 地域宗親會의 構成內容을 本會에 登錄한다.

④本會는 典禮委員會를 두고 그 隷下에 祭儀會, 太 師廟管理委員會, 雲谷書院擔當 部署号 둔다.

⑤本會의 傘下에 文獻編纂委員會를 둔다.

⑥本會는 傘下에 青壯年會長協議會의 婦女會長協 議會를 둔다.

⑦本會는 財團法人 陵洞奬學會를 두고 運營한다.

⑧本會의 傘下에 理事會를 둔다.

⑨本會의 傘下에 宗報編輯委員會를 둔다.

⑩本會의 傘下에 耆老會를 둔다.

①本會 運營의 實務執行 및 處理를 爲하여 事務處 를 둔다.

第3章 任 員

第8條(任員) 本會의 任員으로, 會長 1人. 監事2人. 首席 副會長 1人, 常任副會長 3人, 副會長 100人內外, 派宗 會長協議會長1人, 地域宗親會協議會長1人, 理事100人 內外, 宗務委員70人內外, 典禮委員會委員長, 宗報編輯 委員會委員長, 文獻編纂委員會委員長, 太師廟管理委 員會委員長,事務總長,青壯年協議會長,婦女會協議會 長은 各1人을 둔다.

第9條(任員의機能) ①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宗務를 總轄計立 總會, 宗務委員會, 常任委員會, 理事會의 議

②首席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首 席副會長, 常任副會長 中 年齢順으로 會長의 職務号

③常任副會長은 本會의 諸般業務를 管掌한다.

④派宗會長協議會長은 15派宗會長으로 協議會号 構成, 運營하며 議長으로서 職務를 遂行한다.

⑤地域宗親會長協議會長은 各 地域宗親會長으로 協議會를 構成하여 運營하며 議長으로서 職務를 遂行

⑥典禮委員長은 典禮委員會를 代表하여 祭儀會를 管掌하고 祭禮에 관한 諸般業務를 遂行한다.

⑦太師廟管理委員長은 太師廟管理規定에 따라 職

務를 遂行한다. ⑧理事會는 總會의 案件과 任員選任을 審議 議決

⑨文獻編纂委員長은 權門歷史에 관한 研究資料의 蒐集,編纂과 譜學에 관한 教育을 한다.

⑩青壯年會長協議會長은 地域青壯年會長으로 協議 會를 構成하여 協議會 運營과 事業에 關한 業務를 遂

①婦女會長協議會長은 地域婦女會長으로 協議會号 構成하여 協議會運營과 事業에 關한 業務를 遂行한

迎宗報編輯委員長은 宗是를 履行하여 權門楊達을 圖 謀하기 위하여 安東權氏宗報를 企劃, 編輯 한다.

③事務總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事務處 各 部署의 業務執行을 總括 한다.

(1)監事는 本會의 宗務, 資産實査, 會計, 財政運營에 대하여 年1회 以上 監査하여 定期總會와 宗務委員會 에 報告하다.

第10條(任員의選任 및任期) ①會長은 常任委員會,宗 務委員會, 會長團 推薦으로 理事會의 同意를 거쳐 總 會에서 推戴하고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會長,監事를 除外한 任員은 會長이 選任하고 宗 務委員會에 報告한다. 단, 派宗會長協議會長,地域宗親 會長協議會長, 靑壯年會長協議會長, 婦女會長協議會 長은 各 協議會의 會議에서 互選한다.

③ 理事는 會長이 選任하고 宗務委員會에 報告한다.

④宗務委員은 各派宗會長을 包含하여 樞密公派, 僕 射公派 各 10人, 副正公派8人, 佐尹公派5人, 檢校公派5 人, 그 外 各派는 3人으로 하고 派宗會長의 推薦을 받 아 會長이 選任한다.

⑤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으며, 但 會長은 再任할 수 있다. 任員은 選任된 날로부터 始作하여 任期,滿了되는 해의 定期 總會日까지로 하 며, 會長 補選 時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하되 6個月 未滿인 境遇는 補選하지 아니한다.

⑥事務總長은 會長이 任命하고 常任委員會에 報告

第11條 (諮問機關) 本會의 重要事項에 關한 諮問을 받 기 위하여 다음의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

①會長은 前任會長으로서 功이 많은 분을 名譽會長 으로 둘 수 있다.

②學識과 德望이 높은 분으로 本會 發展에 功勞가 있는 분을 會長이 推薦하여 常任委員會 同意를 받아 顧問으로 委囑한다.

参祭員으로 構成하여 首任이 議長으로 會議를 主宰하 고 意見을 綜合하여 本會 運營에 反影한다.

④本會는 必要 時 諮問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第4章 會 議

第12條(議決機構) 本會는 다음 議決機構를 둔다.

- 2. 宗務委員會
- 常任委員會
- 4. 理事會

第13條(總會의構成)①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構 로서 任員으로 構成한다.

第14條(總會의 種類 및 召集)

①總會는 定期總會의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定期總會는 每 會計年度 終了 後 2個月 以內에 召 集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 時 召集할 수 있으며 在籍人員 3분의 1 以上의 要請이 있거나 宗務委員會 議決에 依하여 召集要求가 있을 時 30日 以內에 會長 이 이를 召集한다.

③ 總會의 召集은 會議 開催 7日 前까지(發送日 基 準) 會議 目的과 日時,任員들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製15條(總會의機能) 總會는 다음 事案을 審議 議決한다.

①宗務委員會 主要 議決事項 認准

②定款의 制定 및 改正

③會長推戴 및 監事의 選出.

④事業計劃에 의한 豫算 및 決算의 承認

⑤本會의 財産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단. 緊急을 要할 경우는 宗務委員會에 委任한다.

⑥監事報告의 承認

⑦其他 宗務에 關한 事項

第16條(總會의議決)①總會는任員過半數出席引出 席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境遇 議長 이 決定한다.

②不得已む 境遇, 任員은 委任狀을 提出할 수 있으 며 出席人員 數로 算定한다.

第17條 (宗務委員會의 構成) 各派宗會長의 推薦에 依해 會長이 選任, 構成한다.

第18條(宗務委員會議 召集) 宗務委員會는 會長이 必要 하다고 認定할 時 또는 宗務委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 이 있을 時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9條(宗務委員會의機能) 宗務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또는 議決한다.

①定款의 制定 및 改正을 事前 審議

② 會長候補의 推戴 및 監事候補의 選出

③會長이 選任한 任員 承認에 對한 同議

④財産取得 및 處分, 譲渡에 關シ 事項 단, 緊急을 要할 경우는 常任委員會에서 議決하고 此

後宗務委員會議에서 承認을 받으며 總會에 報告한다. ⑤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 審議議決

⑥監事報告 ⑦賞罰事項 ⑧其他 宗務에 關シ 事項

第20條(宗務委員會의 議決) 宗務委員會議는 宗務委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 數인 경우 議長이 決定한다.

第21條 (常任委員會의 構成 및 召集) ①會長團 및 宗務 委員中에서 會長이 推薦한 20人 內外의 人員을 選任 하여 常任委員會를 構成한다.

②常任委員會는 會長이 必要 時 召集한다.

第22條(常任委員會의機能) 常任委員會는 總會 및 宗務 委員會의 常任機構로써 다음 事項을 議決하며 重要事 項은 此後에 宗務委員會 承認을 받는다.

①宗務의 緊急한 重要事項과 宗務委員會에서 委任

②宗務委員會에 附議堂 委任事項을 審議 ③決算 및 事業 豫算案 審議

④財産變動에 관한 事項과 財産의 擔保, 讓渡, 分割 에 關하 事項의 審議議決

⑤總會 및 宗務委員會에서 議決한 財産取得 및 處 分, 擔保, 讓渡, 分割 등에 隨件하는 關聯機關에 대한

⑥官公署에 許可 및 特許申請 등 諸般 行政業務 支 援을 위한 總會 任員의 役割

⑦宗務執行에 必要한 施行規則의 制定 ⑧宗員의 褒賞, 其他宗事에 關한 事項

第23條(派宗會長協議會의 構成) 派宗會長協議會는 15 個派 會長과 各 派宗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으로 構成

第24條(派宗會長協議會의 機能) 派宗會長協議會는 各 派宗會間의 親睦과 門中團合을 爲한 事項, 會長團과 典禮委員會에 建議할 事項 및 祭儀에 關한 事項을 議

第25條(地域宗親會長協議會의構成)地域宗親會長協議 會는 本會에 登錄된 各 地域宗親會長으로 構成한다.

第26條(地域宗親會長協議會의機能) 地域宗親會長協議 會는 全國 宗親會의 親睦과 團合을 爲한 事項, 會長團 과 宗務委員會에 反影할 事項 및 其他討議事項을 議

第27條(典禮委員會) ①典禮委員會는 典禮에 밝은 會員 으로 會長이 選任하여 構成하고 始祖, 郞中公 享祀— 切을 擔當한다.

②次期 祭儀會 有司를 選任하여 望記로 通報하며 首任 決定 時는 會長과 協議한다.

第28條(會議結果處理)事務總長은 各種 會議 時 會議 結果를 會議錄으로 作成하고 可決事實을 立證하기 爲 하여 會長이 指名하는 出席人 2人 以上과 事務總長이 署名하여 保存한다.

第5章 財産管理 및 財政

第29條(財産)①本會의財産은安東權氏大宗會가所有 하고 있는 土地와 建物 및 附屬財産 等으로 區分하여 詳細目錄 및 關聯文書를 事務處에 備置 管理한다.

②財産의 所有權은 安東權氏大宗會로 하며 代表者 名을 함께 記入하여 登記한다.

第30條(財政運營) ①本會의 年間財政運營은 賃貸收入, 會費, 贊助金, 各種減金, 其他事業收益 등으로 充當한다. ②모든 收入은 第1金融計座로 入金處理한다.

第31條(收入 및 豫算 決算) 事務總長은 特別會計의 一 般會計로 區分하여 會計年度 監査를 畢한 후 決算報 告와 豫算案을 作成하여 宗務委員會 承認을 得한 후 總會에서 議決을 받는다.

第32條(會計年度)本會의 會計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 末까지로 한다.

第6章 宗務

第33條(事業) 本會의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①安東市 西後面 城谷里 安東權氏 始祖墓所 및 郎 中公壇所의 守護와 春秋 享祀의 奉行

②陵洞察舍外碑閣,附屬財產等의守護 및管理維持 ③安東市 北門洞 太師廟의 享祀 奉行과 守護에 參與 ④慶州市 江東面 旺信里 雲谷書院의 祭享과 守護에

⑤國內外 安東權氏 門中의 道義 및 文化暢達과 教 養을 爲한 安東權氏宗報 發刊

⑥後學啓導를 위한 奬學事業

會에서 主管하는 全國體典과 婦女會 活動 支援. ⑧社會倫理培養을 爲む 譜學教育

⑨安東權氏 陵洞文人會 運營을 通む 目的事業 弘報

10社會奉仕活動

①其他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과 收益을 爲 한 事業部의 設置와 運營.

第34條(職員의機能) ①宗事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해서 常勤職員을 두고 常勤職員은 一定한 活動費를 支給하 며 職員의 細部機能은 施行規則으로 定한다.

②事務總長은 安東權氏宗報 編輯人으로서 宗報号 發行 配布하며 會長을 代理하여 不動産 賃貸業을 管 掌하는 등의 事業을 執行한다.

第35條(文書管理)①文書는 永久保存文書의 中長期文 書 및 短期文書로 區分 管理하며 그 중 永久保存文書 는 定款, 沿革誌, 財産目錄, 登記權利證, 陵洞獎學會 登記文書, 成化譜 및 大同譜, 安東權氏宗報綴, 安東權 氏寶書寶鑑. 祭儀會有司選任錄 등이며 中長期保存文 書는 任員名帖, 時到記, 豫算決算書綴, 現金出納簿, 預 金通帳,各種會議錄 등이고 詳細項目은 施行規則으로

②安東權氏實書寶鑑, 大同譜, 宗報 및 其他書籍出版과 온라인出版, 譜學教育 및 敎養 등 關聯宗事를 研究 編纂 하기 爲하여 必要한 圖書를 保管 管理한다.

第7章補則

第36條 (特典 및 褒賞) 會員 相互間 親睦과 崇祖精神을 高揚코자 享祀 등 門中行事에 参與하고 門事에 寄與 하거나 特別한 善行이 있는 會員에 대하여 運營委員 會 審議를 거쳐 褒賞 등 特典을 附與한다.

第37條 (罰過) 本院의 族親 會員으로서 不美한 行爲로 先祖와 門中에 得罪하거나 本院의 目的事業을 妨害한 者 또는 宗中社會에서의 非理와 不正을 恣行한 者는 宗務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이 懲戒한다.

1. 警告 : 文書로 本人에게 通報한다.

2. 資格停止: 會員으로서의 資格이 停止되었음을 文書로 本人에게 通報한다.

第38條(施行規則)①本 定款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中 宗事를 遂行하기 爲한 細部事項은 施行規則으로 定한

②施行規則은 會長團會議에서 議決한다.

第39條(施行日)本定款은安東權氏統合推進委員會에 서 制定하여 中央宗親會 代議員과 大宗會 宗務委員 連席會議인 總會에서 議決하여 總會議決日인 2011年 6月 7日부터 發效한다.

附則

第1條 (準用規定) 本 定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通 常慣例에 따른다.

第2條(經過措置)①中央宗親會代議員과大宗會宗務委 員 連席會議인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은 安東權氏大宗院 의 新定款에 依하여 議決된 것으로 본다.

②本院의 創立 總裁, 監事 選出은 既存 中央宗親會 代議員과 大宗會 宗務委員 連席會議인 總會에서 口頭 呼薦으로 選出하며 副總裁, 宗務委員 및 代議員 選任 은 總裁에게 委任하다.

③本院의 此後 任員 選出은 大宗院 運營委員, 監事, 事務總長,事務副總長으로 選擧管理委員會를 構成한다. ④本 定款의 施行과 同時에 安東權氏大宗會와 安東

附則

權氏中央宗親會의 定款은 ユ 效力은 喪失한다.

第1條 (準用規定) 本 定款에 明示지 않은 事項은 通常

慣例에 따른다. 第2條(經過措置) 本 定款은 安東權氏大宗會定款改正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審議. 常任委員會의 審議. 總會

에서 議決한 것으로 2018年5月30日부터 施行한다.

안동권씨 제30회 전국체육대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국 31개 지역과 일본 등에서 2천여 족친님께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빗속에서도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00만 안동권문의 시조님께서 돌봐주신 덕분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본 행사가 성공(안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주최 측의 준비보다는 본 행사에 꼭 참여하겠다는 족친님들의 숭조애족의 정성이 더 컸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원근 각지에서 雨中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참여해주신 족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 2018년 5월6일 (오전10시) 장소: 한강공원 잠원지구 다목적 경기장 100만 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진솔한 소통으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도 없으며, 헤쳐 나가지 못할 역경도 없다고 봅니다. 100만 족친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5.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승호